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산업환경 및 제품의 개발·공급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인증심사 체계를 다양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유형 관련 심의사항 정비(안 제5조 및 제7조)

표준회의 및 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인증심사 유형의 결정 및 품목별·분야별 적용·변경에 관한 심의체계를 마련함

나. 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 마련(안 제18조의2)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화재·폭발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을 고위험 광공업품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품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다. 산업표준과 관련 기준 간 정합성 확보(안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이나 표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뿐 아니라 상충 방지를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제품 인증심사에 품질관리심사 도입(안 제24조 및 제26조의2)

제품 인증심사의 종류에 품질관리심사를 추가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따라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27조)

기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조사 및 확인조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사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수거등 명령 이행관리 및 공표 절차 마련(안 제29조부터 제29조의3까지)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보완, 결과보고 및 이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거등 명령 공표에 필요한 사항 마련

사. 온라인 불법 제품·서비스 유통 방지 절차 마련(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

온라인상 불법 제품서비스이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게시물·상품정보 삭제, 접속경로 차단 등의 조치 요청 절차를 마련함

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비용 등 지원(안 제29조의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인증심사 등에 필요한 시험·검사 비용 및 수수료와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현황 분석·평가(안 제30조의2)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화 비율 및 분야별 부합화 비율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차.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표준 및 인증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카.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33조)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29.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의 품목별 또는 분야별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공업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공업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결함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
2. 고유한 특성상 화재·폭발·감전·붕괴 등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

제18조의3제1항 중 “법 제5조의2제1항”을 “법 제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부합화”를 “부합화 및 상충 방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및 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질관리심사: 제품의 품질관리체계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를 “그 제품의 제조공장이나 그 제품이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게 도달한 이후 사용 전 상태에서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각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수거 명령의 절차”를 “수거등 명령의 절차”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수거”를 “수거등”으로 하고, 같은 같은 항 제5호 중 “제품수거”를 “수거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거등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거등 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거등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거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

로 정하는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이행점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수거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만으로 수거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보완명령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명령의 내용을 이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완명령 이행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수거등의 명령 사실의 공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품목명, 상표 또는 모델명

2. 수거등의 명령 사유 및 내용

3.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의 상호

제29조의4(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온라인 유통·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상품정보 또는 광고 내용
2. 제1호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2. 요청하는 자료의 내용 및 범위
3. 자료 제출 기한
4. 자료 제출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의5(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중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게시물 또는 상품정보의 삭제
2. 불법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게시물 또는 상품정보가 게시된 페이지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의 법적 근거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확인된 사실
3. 요청하는 조치의 내용
4. 조치 이행 기한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사유로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의 지원)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필요한 시험·검사 비용 및 인증 또는 심사에 따른 수수료로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지도 및 컨설팅
2. 시험·검사를 위한 시설·장비 공동활용 지원
3. 시험인프라의 구축 지원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3으로 하고, 제30조의3을 제30조의4로 하며, 제30조의4를 제30조의5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화 현황의 분석·평가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의 부합화 현황의 분석·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화 비율
2. 한국산업표준의 분야별 부합화 비율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부합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3호, 제9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의2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5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4호의2를 삭제한다.

3. 법 제5조, 법 제5조의2, 법 제5조의3 및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6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

9.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청

10. 법 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공표 및 이행현황 점검 등의 조치

11의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11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1의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

11의5. 법 제27조의2에 따른 단체표준 촉진 사업

12의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합화 현황의 분석·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3의3. 법 제31조의5에 따른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부터 제11호의2까지, 제11호의4,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제33조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 광공업품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고시되는 고위험 광공업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기교육 주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양성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의 기한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이후 정기심사·이전심사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설치·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가 상정한 사항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표준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신 설>	3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현 행	개 정 안
	유형의 품목별 또는 분야별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공업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공업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결함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 2. 고유한 특성상 화재·폭발·감전·붕괴 등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18조의3(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및 상충 방지)**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

현 행	개 정 안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표준과의 부합화 및 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제정하는 경우 2.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분야의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1.~ 4. (현행과 같음)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품질관리심사: 제품의 품질관리체계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삭 제>
1.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삭 제>
2.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비스 :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삭 제>
제27조(시판품조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시판품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이나 그 제품이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게 도달한 이후 사용 전 상태에서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각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현행과 같음)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수거등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	1. ~ 4. (현행과 같음)
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거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

현 행	개 정 안
	출된 수거등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 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거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거 내용과 실적 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29조의2(이행점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수거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만으로 수거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완하여

현 행	개 정 안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보완명령의 내용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명령의 내용을 이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3 (수거등의 명령 사실의 공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품목명, 상표 또는 모델명 2. 수거등의 명령 사유 및 내용 3.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의 상호
<신 설>	**제29조의4(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온라인 유통·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상품정보 또는 광고 내용

현 행	개 정 안
	2. 제1호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2. 요청하는 자료의 내용 및 범위 3. 자료 제출 기한 4. 자료 제출 방법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5(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중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게시물 또는 상품정보의 삭제 2. 불법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게시물 또는 상품정보가 게시된 페이지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의 법적 근거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확인된 사실 3. 요청하는 조치의 내용 4. 조치 이행 기한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사유로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6(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의 지원)**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신 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필요한 시험·검사 비용 및 인증 또는 심사에 따른 수수료로 한다.
<신 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지도 및 컨설

현 행	개 정 안
	팅 2. 시험·검사를 위한 시설·장비 공동 활용 지원 3. 시험인프라의 구축 지원
<신 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2(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화 현황의 분석·평가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의 부합화 현황의 분석·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간 부합화 비율 2. 한국산업표준의 분야별 부합화 비율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부합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30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 ② (생 략)	**제30조의4(품질경영추진본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제30조의5(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현 행	개 정 안
지원) ① ~ ④ (생 략)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5조, 법 제5조의2 및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3. 법 제5조, 법 제5조의2, 법 제5조의3 및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9.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명령	11. 법 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공표 및 이행현황 점검 등의 조치
<신 설>	11의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신 설>	11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1의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
<신 설>	11의5. 법 제27조의2에 따른 단체표준 촉진 사업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화 협력 사업 추진	1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제표준화 협력 사업 추진
<신 설>	12의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합화 현황의 분석·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3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1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3. 법 제31조의5에 따른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14. ~ 23. (생 략)	14. ~ 23. (현행과 같음)
23의2. 제18조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23의2. 제18조의3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2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2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4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24의2. <삭 제>
25.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의 수리	25.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1. 제1항제3호부터 6호까지, 7호부터 제11의2호까지, 제11의4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 5. (생 략)	2.~ 5. (현행과 같음)
6.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보고	6. <삭 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매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1의2]	[별표1의2]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이 모두 표시정지 또는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사업장심사 또는 서비스심사의 경우에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마. (현행과 같음)
바. 표시정지·판매정지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바. 표시정지·판매정지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표시제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을 함께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의 보고 결과 또는 법 20조에 따른 시판품			

위 반 행 위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이상 위반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조사·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가. <전단신설>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신 설>				나.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나. <전단신설>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3개월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3개월
다. <전단신설>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표시정지 3개월및판매	표시정지 6개월및판매	표시정지 6개월및판매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	표시정지 3개월및판매정지	표시정지 6개월및판매정지	표시정지 6개월및판매정지

현 행				개 정 안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정지3개월	정지6개월	정지6개월	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6개월	6개월
라. <전단신설>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1개월	표시정지3개월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1개월	표시정지3개월
마.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표시정지1개월	표시정지3개월	표시정지6개월	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표시정지1개월	표시정지3개월	표시정지6개월
<신 설>				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3개월
<신 설>				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표시정지1개월	표시정지3개월	표시정지6개월
바. <전단신설>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	표시정지6개	표시정지6개	표시정지6개	자. 법 제19조,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표시정지6개월	표시정지6개월	표시정지6개월

현 행			
(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월및판매정지6개월	월및판매정지6개월	월및판매정지6개월
사. <전단신설>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6개월및판매정지6개월	표시정지6개월및판매정지6개월	표시정지6개월및판매정지6개월

개 정 안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및판매정지6개월	및판매정지6개월	및판매정지6개월
차. 법 제19조,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6개월및판매정지6개월	표시정지6개월및판매정지6개월	표시정지6개월및판매정지6개월

[별표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 · 시간 · 주기 및 실시기관

(제30조제2항 관련)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과정	내 용	시 간	
		양성교육	정기교육
경영간부	1) 산업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3)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5)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	16시간

[별표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 · 시간 · 주기 및 실시기관

(제30조제2항 관련)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과정	내 용	시 간	
		양성교육	정기교육
경영간부	1) 산업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3)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5)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	16시간

현 행				개 정 안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6)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6)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품질관리담당자	1) 산업표준화법규 2)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3)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5)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6)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0시간	16시간	품질관리담당자	1) 산업표준화법규 2)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3)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5)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6)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0시간	16시간
2. 교육 주기 : 정기교육은 3년.				2. 교육 주기 : 정기교육은 4년.			
3. 교육실시기관: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 교육실시기관: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별표4]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 벌금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 벌금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현 행	개 정 안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이상
<신 설>				
<신 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제1호	300	600	10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의3	법 제44조제1항 제2호	300	600	1000

현 행					개 정 안				
					제2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신 설>					라.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 설>					마.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나.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4호	50	100	2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	법 제44조제1	100	200	300	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법 제44조제2항제5호	100	200	300

현 행					개 정 안				
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항제3호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라.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6호	50	10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혁신과	
연 락 처	(043) 870 - 5382